

2. 開發利益還收에關한法律施行規則中改正令

建設部令 第495號 1991. 11. 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원지설치사업등에 있어서의
부과대상범위) ①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판의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
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
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판의 유
통업무설비설치사업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 및 도시
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
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소매업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전립하는 경우
③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판의 “제
1호 내지 제10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
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
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15일”
을 “25일”로 한다.

제14조중 “15일”을 “25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제3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유 원 지 설 치 사 업	공 원 사 업	
근 거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48조제1항제4호)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부과대상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회시설 • 클프연습장 • 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 한다) • 식당 및 경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 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회시설 • 클프연습장 • 대중음식점

〔별표 2〕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허가 또는 조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제3조의2제3항 관련)

구 分	부 과 대 상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2항·제14항·제15항 및 제 30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 한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제18항 및 제19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창고시설 및 주유소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20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회버스정류장·화물자동차정 류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클프장업 및 클프연습장업시설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면적

(제3조의3 관련)

건축물	부과대상 토지 면적	
공장외건축물	도시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공장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휴양콘도미니엄 등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의2 제1항).
- 나. 화물적하시설·농산물공판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업무 설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의2제2항).
- 다.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농지전용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시설을 정함(제3조의2제3항).
- 라.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을 정함(제3조의3). 〈건설부 제공〉